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전 체 〉	24,681	25,066	385	1.6	25,599	533	2.1
○ 농 림 어 업	1,528	1,520	-8	-0.5	1,452	-68	-4.5
○ 광 공 업	4,120	4,200	80	1.9	4,343	143	3.4
- 제 조 업	4,105	4,184	79	1.9	4,330	146	3.5
○ 건 설 업	1,773	1,754	-19	-1.1	1,796	42	2.4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595	5,630	35	0.6	5,889	259	4.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8,668	8,903	235	2.7	9,079	176	2.0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997	3,059	62	2.1	3,041	-18	-0.6
〈 남 자 〉	14,387	14,573	186	1.3	14,839	266	1.8
○ 농 림 어 업	870	870	0	0.0	837	-33	-3.8
○ 광 공 업	2,850	2,942	92	3.2	3,049	107	3.6
- 제 조 업	2,837	2,928	91	3.2	3,037	109	3.7
○ 건 설 업	1,626	1,614	-12	-0.7	1,645	31	1.9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706	2,695	-11	-0.4	2,857	162	6.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4,098	4,165	67	1.6	4,183	18	0.4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238	2,286	48	2.1	2,268	-18	-0.8
〈 여 자 〉	10,294	10,494	200	1.9	10,761	267	2.5
○ 농 림 어 업	659	650	-9	-1.4	615	-35	-5.4
○ 광 공 업	1,270	1,258	-12	-0.9	1,294	36	2.9
- 제 조 업	1,268	1,256	-12	-0.9	1,293	37	2.9
○ 건 설 업	147	139	-8	-5.4	151	12	8.6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889	2,935	46	1.6	3,032	97	3.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4,570	4,738	168	3.7	4,896	158	3.3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59	774	15	2.0	773	-1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전 체 〉	24,681	25,066	386	1.6	25,599	533	2.1
○ 관 리 자	464	403	-61	-13.1	397	-7	-1.7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791	4,966	175	3.6	5,123	157	3.2
○ 사무종사자	4,100	4,218	118	2.9	4,311	93	2.2
○ 서비스종사자	2,546	2,575	30	1.2	2,697	122	4.7
○ 판매종사자	3,009	3,032	23	0.8	3,107	75	2.5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25	1,426	2	0.1	1,363	-64	-4.5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79	2,221	-58	-2.5	2,247	26	1.2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863	2,998	135	4.7	3,061	63	2.1
○ 단순노무종사자	3,204	3,227	23	0.7	3,295	67	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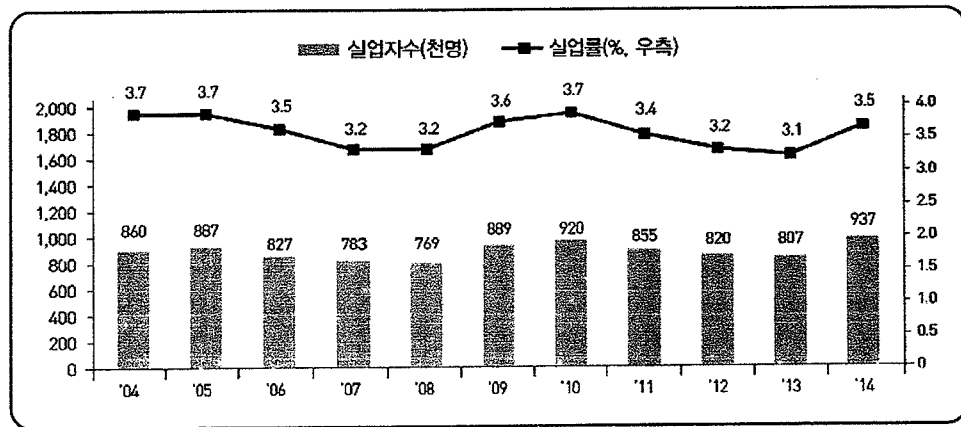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p,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증 감		2014년	증 감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전 체 〉	820 (3,2)	807 (3,1)	-13 (-0,1p)	-1,6	937 (3,5)	130 (0,4p)	16,1
남 자	504 (3,4)	498 (3,3)	-6 (-0,1p)	-1,2	548 (3,6)	50 (0,3p)	9,9
여 자	316 (3,0)	309 (2,9)	-7 (-0,1p)	-2,2	389 (3,5)	80 (0,6p)	26,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계층별, 학력별 실업률

(단위 : 천명, %, %p,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증 감		2014년	증 감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전 체 〉	820 (3,2)	807 (3,1)	-13 (-0,1p)	-1,6	937 (3,5)	130 (0,4p)	16,1
15~29세	313 (7,5)	331 (8,0)	17 (0,5p)	5,6	385 (9,0)	54 (1,0p)	16,4
· 15~19세	22 (8,8)	26 (10,3)	4 (1,5p)	15,7	25 (9,2)	-1 (-1,1p)	-3,9
· 20~24세	124 (9,0)	129 (9,2)	5 (0,2p)	4,0	154 (10,2)	25 (1,0p)	19,3
25~29세	167 (6,6)	176 (7,1)	9 (0,5p)	5,5	206 (8,3)	30 (1,2p)	17,2
30~39세	177 (3,0)	175 (3,0)	-2 (0,0p)	-1,1	183 (3,1)	9 (0,1p)	4,9
40~49세	138 (2,0)	134 (2,0)	-5 (0,0p)	-3,4	153 (2,2)	20 (0,2p)	14,8
50~59세	115 (2,1)	107 (1,9)	-9 (-0,2p)	-7,5	134 (2,2)	27 (0,3p)	25,6
60세 이상	77 (2,4)	61 (1,8)	-15 (-0,6p)	-19,9	81 (2,3)	20 (0,5p)	3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p,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전 체 〉	820 (3.2)	807 (3.1)	-13 (-0.1p)	-1.6	937 (3.5)	130 (0.4p)	16.1
중졸이하	126 (2.5)	105 (2.2)	-21 (-0.3p)	-16.7	118 (2.6)	13 (0.4p)	12.7
고 졸	359 (3.6)	347 (3.4)	-12 (-0.2p)	-3.3	416 (4.0)	69 (0.6p)	19.9
대졸이상	335 (3.2)	355 (3.3)	20 (0.1p)	5.9	402 (3.5)	47 (0.2p)	13.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전 체 〉	820	807	-13	-1.6	937	130	16.1
취업 무경험	45	53	8	17.3	64	11	20.0
취업 유경험	775	754	-21	-2.7	873	119	15.8
〈 남 자 〉	504	498	-6	-1.2	548	50	15.8
취업 무경험	26	32	6	21.1	37	6	9.9
취업 유경험	478	467	-12	-2.4	511	44	17.7
〈 여 자 〉	316	309	-7	-2.2	389	80	26.0
취업 무경험	19	21	2	12.0	26	5	23.4
취업 유경험	296	287	-9	-3.1	362	75	2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

■ 비정규직 현황

- 2014년 8월 비정규직(6,077천명)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18,776천명)의 32.4%로 2004년 이후 감소 추세(2004년 37.0% → 2014년 32.4%)
 - 기간제근로자(2,749천명)는 임금근로자의 14.6%(비정규직의 45.2%)로 전년동월대비 11천명 감소
 - 파견근로자(194천명)는 임금근로자의 1.0%(비정규직의 3.2%)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 감소
 - 시간제근로자(2,032천명)는 임금근로자의 10.8%(비정규직의 33.4%)로 전년동월대비 148천명 증가

【근로형태별 규모 및 비중】

(단위 : 천명, %)

	2007년 8월	2008년 8월	2009년 8월	2010년 8월	2011년 8월	2012년 8월	2013년 8월	2014년 8월
임금 근로자	15,882 (100.0)	16,104 (100.0)	16,479 (100.0)	17,048 (100.0)	17,510 (100.0)	17,734 (100.0)	18,240 (100.0)	18,776 (100.0)
정 규	10,180 (64.1)	10,658 (66.2)	10,725 (65.1)	11,362 (66.7)	11,515 (65.8)	11,823 (66.7)	12,295 (67.4)	12,699 (67.6)
비 정 규	5,703 (35.9)	5,445 (33.8)	5,754 (34.9)	5,685 (33.3)	5,995 (34.2)	5,911 (33.3)	5,964 (32.6)	6,077 (32.4)
한시적 근로자	3,546 (22.3)	3,288 (20.4)	3,507 (21.3)	3,281 (19.2)	3,442 (19.7)	3,403 (19.2)	3,431 (18.8)	3,508 (18.7)
〈기간제〉	2,531 (15.9)	2,365 (14.7)	2,815 (17.1)	2,494 (14.6)	2,668 (15.2)	2,714 (15.3)	2,761 (15.1)	2,749 (14.6)
시 간 제	1,201 (7.6)	1,229 (7.6)	1,426 (8.7)	1,620 (9.5)	1,702 (9.7)	1,826 (10.3)	1,883 (10.3)	2,032 (10.8)
비 전 형	2,208 (13.9)	2,137 (13.3)	2,283 (13.9)	2,289 (13.4)	2,427 (13.9)	2,286 (12.9)	2,215 (12.1)	2,112 (11.2)
〈파견〉	174 (1.1)	139 (0.9)	165 (1.0)	211 (1.2)	197 (1.1)	214 (1.2)	204 (1.1)	194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고용형태별

- 2014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전산업 사업체의 시간당 정액급여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14,587원, 정규직근로자 15,684원, 비정규직근로자 11,253원(정규직 대비 71.7%)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보면, 일일근로자(12,535원), 단시간 근로자(11,526원), 기간제근로자(11,230원), 비기간제 한시적근로자(10,088원) 순으로 나타남

※ 시간당 정액급여 = 정액급여 / 소정 실근로시간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단위 : 천원, 원, %)

고용형태별	월급여	정액급여		초과급여	연간 특별급여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	중위수			
전 체	2,353	2,200	1,782	153	4,167	14,587
정 규 직 근 로 자	2,698	2,518	2,025	180	5,429	15,684
비 정 규 직 근 로 자 (정규직 대비 비율)	1,305 (48.4)	1,234 (49.0)	1,050 (51.9)	71 (39.6)	333 (6.1)	11,253 (71.7)
파 견 · 용 역 근 로 자	1,509	1,404	1,318	105	355	8,871
일 일 근 로 자	1,212	1,185	880	28	5	12,535
단 시 간 근 로 자	692	683	600	9	66	11,526
기 간 제 근 로 자	1,938	1,770	1,451	168	1,055	11,230
한 시 적 근 로 자	1,525	1,441	1,205	85	112	10,088
재 택 / 가 내 근 로 자	1,183	1,148	1,000	34	459	9,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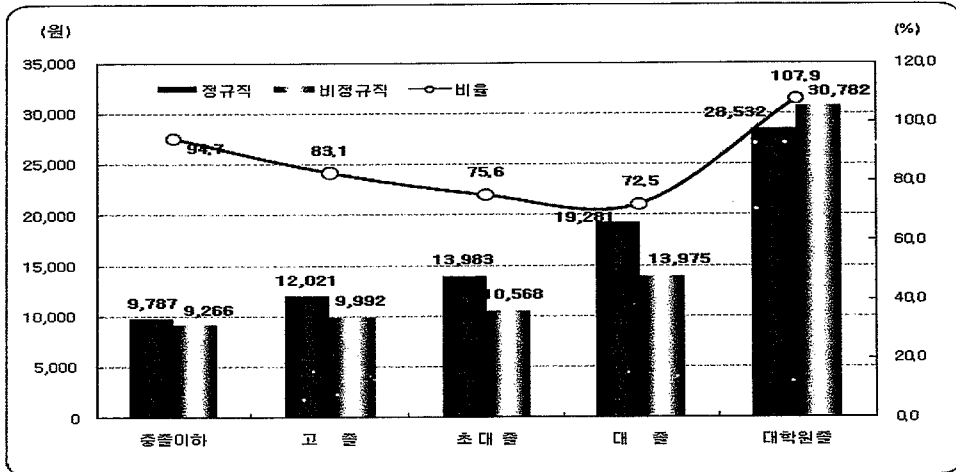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4년)

▣ 학력별

• 시간당 정액급여를 학력별로 보면, 전체 및 고용형태별 모두 고학력일수록 많아짐(대학원졸 28,966원, 대졸 18,669원, 전문대졸 13,507원)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졸 제외, 정규직 대비 107.9%) 낮아져 대졸은 정규직 대비 72.5% 수준으로 가장 낮음

【학력별 시간당 정액급여】



학력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14,587	15,684	11,253 (71.7)
중졸이하	9,491	9,787	9,266 (94.7)
고졸	11,336	12,021	9,992 (83.1)
초대졸	13,507	13,983	10,568 (75.6)
대졸	18,669	19,281	13,975 (72.5)
대학원졸	28,966	28,532	30,782 (1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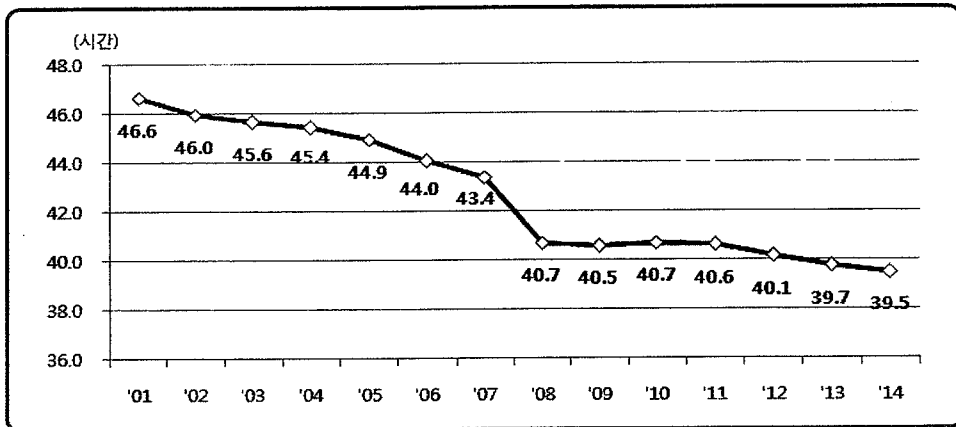
주 : ()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4년)

근로시간 동향

총괄

- 2014년도 주당 총 근로시간은 39.5시간(월 171.4시간)으로 2013년(주 39.7, 월 172.6)보다 주당 0.2시간(0.7%) 감소

【연도별 주당 근로시간 추이】



주 : 1. 2007년까지는 상용근로자 기준이며, 2008년부터는 전체근로자 기준임
 2.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KSIC8→KSIC9) 개편에 따라 시계열 연계를 위해 재산출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40.8시간(월 177.1)으로 전년에 비해 0.6% 감소

【근로일수 및 내역별 주당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일,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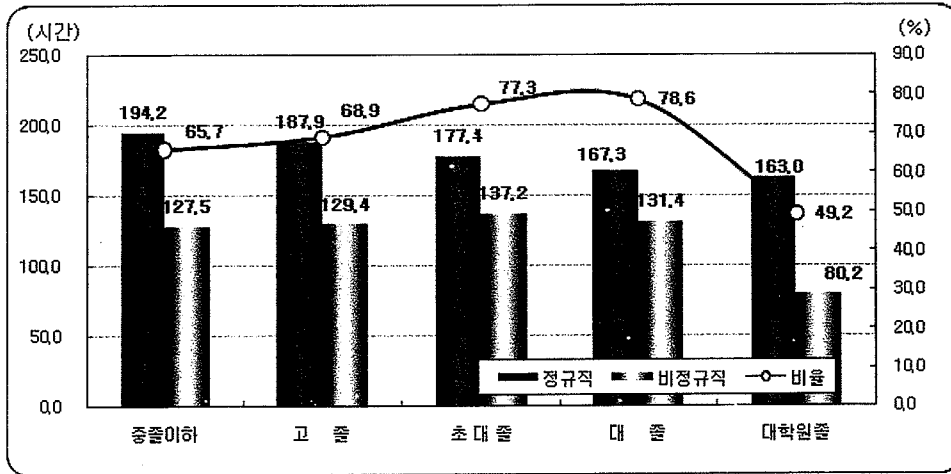
구분	2012년 평균	2013년 평균	2014년 평균
근로일수(증감일수)	20.8 (-0.2)	20.6 (-0.2)	20.4 (-0.2)
전체 총 근로 시간	40.1 [174.3] (-1.1)	39.7 [172.6] (-1.0)	39.5 [171.4] (-0.7)
상용 총 근로 시간	41.4 [179.9] (-1.2)	41.0 [178.1] (-1.0)	40.8 [177.1] (-0.6)
소정실근로시간	38.5 [167.2] (-0.8)	38.1 [165.6] (-1.0)	37.8 [164.1] (-0.9)
초과근로시간	2.9 [12.8] (-5.9)	2.9 [12.5] (-2.3)	3.0 [12.9] (3.2)
임시일용 총근로시간	28.2 [122.3] (-0.2)	28.2 [122.5] (0.2)	26.9 [117.0] (-4.5)

주 : []내는 월간 근로시간,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학력별 근로시간

-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준은 대학원졸(49.2%)을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65% 이상이며, 대졸(78.6%)이 가장 높음

【학력별 총 근로시간】



(단위 : 시간, %)

학력별	전체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전체	165.5	177.7	128.3 (72.2)
중졸이하	156.3	194.2	127.5 (65.7)
고졸	168.1	187.9	129.4 (68.9)
초대졸	171.8	177.4	137.2 (77.3)
대졸	163.2	167.3	131.4 (78.6)
대학원졸	147.0	163.0	80.2 (49.2)

주 : ()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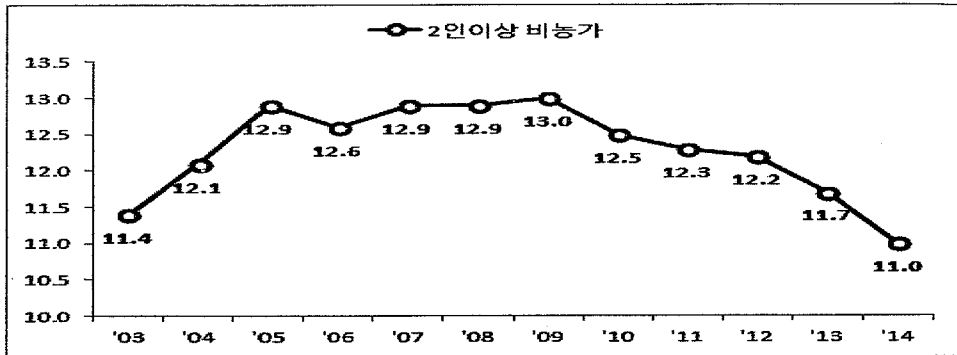
I · 고용노동부 제 1100호

다. 노동분배 동향

상대빈곤율

- 2014년 상대적빈곤율은 11.0%로 전년대비 0.7%p 감소하여 2010년부터 5년 연속 감소
- * 상대적빈곤율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상대빈곤율 추이 (가처분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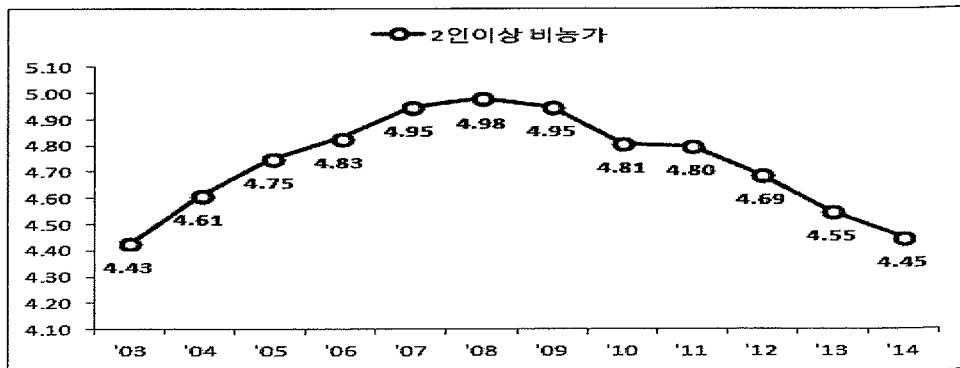


주 : 가처분소득(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소득 5분위 배율

- 2014년 소득 5분위 배율은 4.45배로 2008년의 4.98배 이후 6년 연속 하락하여 2005년 이후 가장 완화된 모습
- * 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냄

【5분위 배율 추이 (가처분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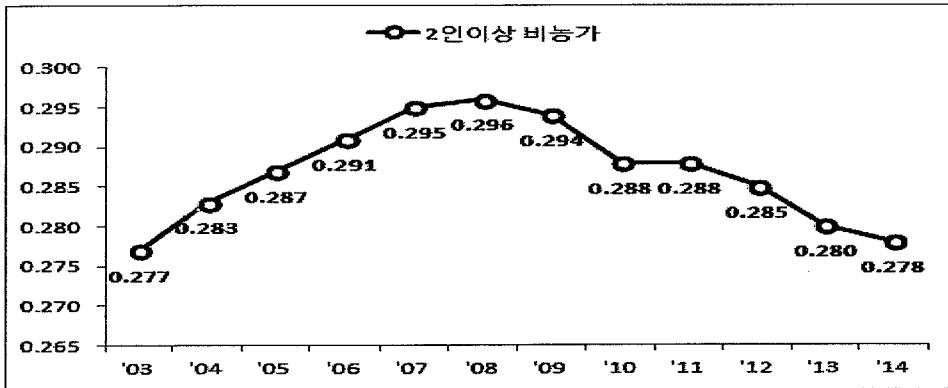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지니계수

- 2014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8로 2008년 0.296의 높은 불평등도를 보인 이후 완화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지니계수 :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음

【지니계수 추이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소득분배지표 추이(2인 비농가가구)】

연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소득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2005년	0.306	5.53	14.7	0.287	4.75	12.9
2006년	0.312	5.74	14.8	0.291	4.83	12.6
2007년	0.321	6.05	15.5	0.295	4.95	12.9
2008년	0.323	6.16	15.0	0.296	4.98	12.9
2009년	0.320	6.14	15.4	0.294	4.95	13.0
2010년	0.314	6.03	14.9	0.288	4.81	12.5
2011년	0.313	6.00	14.9	0.288	4.80	12.3
2012년	0.311	5.79	14.3	0.285	4.69	12.2
2013년	0.308	5.72	14.3	0.280	4.55	11.7
2014년	0.309	5.75	13.7	0.278	4.45	11.0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I · 근로시간조사 결과

7. 최저임금제도

가. 개요 및 도입경위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여건상 최저임금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실제운영은 하지 않다가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와 일정 수준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나. 최저임금제의 내용

▣ 적용대상

-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2000년 11월 24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시 기	1988년 1월 1일	1989년 1월 1일	1990년 1월 1일	1999년 9월 1일	2000년 11월 24일
대상규모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모든 산업	모든 산업	모든 산업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임시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 최저임금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하되, 재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2/3이상 찬성) 시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에 의거하여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함
-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

■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법 제28조)
- 이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법 제6조제3항)
-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등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31조)

■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법 제11조)
-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의 이행을 감독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하여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함(법 제26조)



VII ·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

- 근거 :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시행규칙 제3조
- 적용제외 대상 및 인가기준
 - ①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신 또는 신체 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
 - ※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최저임금현황(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시 간 금	일금 (8시간 기준)	영 향 률
5,210원	41,680	14.6%

-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규정에 의해 감시단속직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적용함

연 도	2001년 9월	2002년 9월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년 8월	2003년 8월	2004년 8월	2005년 8월	2006년 12월								
시 급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인상률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정

■ 최저임금의 산정범위

-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법 제2조)
 -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한편 다음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최저 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법 제6조제4항)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별표1)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별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 명시 또는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직무·직책수당, 물가·조정수당, 기술·면허·특수 작업수당 등

- 다만, 택시근로자의 경우에는 생사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시행시기: 특별시·광역시 2009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 2010년 7월 1일, 그 외 지역 2012년 7월 1일) (2007년 12월 27일 법 제6조제5항 신설)

마.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

- ① 시간급의 경우는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 ② 일급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 ③ 주급, 월급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 ④ 시간·일·주 또는 월 이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①내지 ③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 ⑤ 생사고급제 기타 도급제의 경우는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 ⑥ ①내지 ⑤의 임금이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합산하여 비교

-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바. 최저임금의 효력 등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에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그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시간 → 주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X.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1. 노동조합 현황

- 2013년말 기준, 노동조합은 5,305개, 조합원은 1,848천명(남 1,405천명, 여 443천명)으로 노조 조직률은 10.3%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노동조합이 128개 증가하였고 조합원수는 66천명이 증가하였다.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조합수	5,560	5,637	5,698	6,150	6,506	6,257	6,017	5,971	5,889	5,099	4,886	4,689	4,420	5,120	5,177	5,305
조합원수	1,401	1,480	1,526	1,568	1,538	1,550	1,537	1,506	1,559	1,688	1,666	1,640	1,643	1,720	1,781	1,848

-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2,313개, 조합원은 819,755명으로 전체 조합수의 43.6%, 조합원수의 44.4%이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356개, 조합원은 626,035명으로 전체 조합수의 6.7%, 조합원수의 33.9%이다. 국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100개, 조합원은 20,221명으로 전체 조합수의 1.9%, 조합원수의 1.1%이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2,536개, 조합원은 381,575명으로 전체 조합수의 47.8%, 조합원수의 20.7% 이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노동조합수(연합단체)	조합원수	조합원 구성비
계	5,305(100)	1,847,586	100
한국노총	2,313(43.6)	819,755	44.4
민주노총	356(6.7)	626,035	33.9
국민노총	100(1.9)	20,221	1.1
미 가입	2,536(47.8)	381,575	20.7



- 규모별 노조조직률은 조합원 500인 이상의 대규모 노동조합이 417개, 조합원 1,478천명으로 전체 조합수의 7.9%, 조합원수의 80.0%이며, 조합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동조합은 2,725개, 조합원 45천명으로 전체조합수의 51.4%, 조합원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규모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총 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노동조합수	5,305 (100)	2,725 (51.4)	888 (16.7)	1,031 (19.4)	244 (4.6)	191 (3.6)	226 (4.3)
조합원수	1,847,586 (100)	45,148 (2.4)	62,654 (3.4)	169,564 (9.2)	92,409 (5.0)	132,288 (7.2)	1,345,523 (72.3)

【연도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단위 : 개소, 명, %, 2013년 12월 31일 기준)

연도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직대상 근로자 (천명)	조직률 (%)
	연합단체	단위노조	분회	계	남	여		
1966년	16	359	2,359	326,974	250,656	76,318	-	-
1967년	16	386	2,619	377,576	286,576	91,000	-	-
1968년	16	385	2,732	412,906	309,876	103,030	-	-
1969년	16	417	2,939	444,783	333,317	111,466	-	-
1970년	17	419	3,063	473,259	357,881	115,378	-	-
1971년	17	446	3,062	497,671	373,985	123,686	-	-
1972년	17	430	2,961	515,292	380,706	134,586	-	-
1973년	17	403	2,865	548,054	392,071	155,983	-	-
1974년	17	432	3,352	655,785	463,132	192,653	-	-
1975년	17	488	3,585	750,235	508,966	241,269	-	-
1976년	17	517	3,854	845,630	559,486	286,144	-	-
1977년	17	538	4,042	954,727	634,961	319,766	3,752	25.4
1978년	17	552	4,305	1,054,608	696,865	357,743	4,229	24.9
1979년	17	553	4,394	1,088,061	723,583	364,478	4,461	24.4
1980년	16	2,618	3,227	948,134	600,383	347,751	4,516	21.0
1981년	16	2,141	-	966,738	628,259	338,479	4,649	20.8
1982년	16	2,194	-	984,136	633,106	351,030	4,878	20.2
1983년	16	2,238	-	1,009,881	673,411	336,470	5,212	19.4
1984년	16	2,365	-	1,010,522	683,542	326,980	5,588	18.1
1985년	16	2,534	-	1,004,398	691,911	312,487	5,956	16.9
1986년	16	2,658	-	1,035,890	724,566	311,324	6,177	16.8
1987년 6월 30일	16	2,725	-	1,050,201	743,209	306,992	6,701	15.7
1987년	16	4,086	-	1,267,457	900,129	367,328	6,853	18.5
1988년 6월 30일	20	5,062	-	1,525,088	1,094,905	430,183	8,382	18.2
1988년	21	5,598	-	1,707,456	1,232,400	475,056	8,764	19.5
1989년 6월 30일	22	6,638	-	1,825,093	1,318,422	506,671	9,286	19.7
1989년	22	7,861	-	1,932,415	1,402,106	530,309	9,752	19.8
1990년	22	7,698	-	1,886,884	1,384,730	502,154	10,264	18.4
1991년	22	7,656	-	1,803,408	1,341,745	461,663	10,483	17.2
1992년	22	7,531	-	1,734,598	1,323,521	411,077	10,568	16.4
1993년	27	7,147	-	1,667,373	1,275,859	391,514	10,679	15.6
1994년	27	7,025	-	1,659,011	1,285,627	373,384	11,450	14.5
1995년	27	6,606	-	1,614,800	1,254,133	360,667	11,687	13.8
1996년	27	6,424	-	1,598,558	1,259,932	338,626	12,020	13.3
1997년	41	5,733	-	1,484,194	1,194,414	289,780	12,192	12.2
1998년	43	5,560	-	1,401,940	1,148,435	253,505	11,166	12.6
1999년	45	5,637	-	1,480,666	1,173,239	307,427	12,455	11.9
2000년	46	5,698	-	1,526,995	1,221,117	305,878	12,701	12.0
2001년	45	6,150	-	1,568,723	1,263,314	305,409	13,103	12.0
2002년	43	6,506	-	1,605,972	1,306,221	299,751	13,839	11.6
2003년	45	6,257	-	1,549,949	1,223,330	326,619	14,144	11.0
2004년	44	6,017	-	1,536,843	1,211,952	324,891	14,538	10.6
2005년	45	5,971	-	1,506,172	1,182,535	323,637	14,692	10.3
2006년	54	5,889	-	1,559,179	1,215,252	343,926	15,072	10.3
2007년	53	5,099	-	1,687,782	1,317,467	370,315	15,651	10.8
2008년	56	4,886	-	1,665,798	1,290,682	375,116	15,847	10.5
2009년	55	4,689	-	1,640,334	1,285,965	354,369	16,196	10.1
2010년	54	4,420	-	1,643,113	1,272,274	370,839	16,804	9.8
2011년	64	5,120	-	1,719,922	1,328,055	391,867	17,090	10.1
2012년	66	5,177	-	1,781,337	1,358,699	422,638	17,338	10.3
2013년	68	5,305	-	1,847,568	1,404,821	442,765	17,961	10.3



IX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주1) 조직률 산정방식 : 조합원수 ÷ 조직대상근로자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 공무원(5급 이상, 6급 이하 중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교원중 교감이상 관리자 제외))] × 100

주2) 연합단체는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를 포함한 숫자임

주3) 단위노조는 연합단체를 포함한 전체 노조수임

※ 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2. 노사분규 현황

총괄

- 노동쟁의 조정신청건수(노사분규 선행지수)는 886건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11건으로 전년 대비 54.2% 증가
- 근로손실일수는 650,924일로 전년 대비 2.1% 증가
- 건당 분규지속일수는 40.5일로 전년 대비 145.5% 증가
- 불법분규발생건수는 7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
- 분규참가자수는 133,324명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

(단위 : 건, 천명, 천일, 일,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노동쟁의 조정신청(건)	868	891	758	885	851	726	708	695	752	762	886
노사분규 발생건수(건)	462	287	138 <253>	115 <212>	108 <130>	121 <175>	86 <184>	65 <75>	105 <165>	72 <143>	111 <377>
분규참가 자수(천명)	185	118	131	93	114	81	40	33	134	113	133
근로손실 일수(천일)	1,199	848	1,201	536	809	627	511	429	933	638	651
건당분규 지속일수(일)	24.7	48.6	54.5	33.6	37.0	27.9	36.2	30.6	31.7	16.5	40.5
불법분규 건수(건) (비율)	58 (12.6)	17 (5.9)	24 (17.4) <(24)> <<(9.5)>	17 (14.8) <(17)> <<(8.0)>	17 (15.7) <(32)> <<(29.6)>	11 (9.1) <(11)> <<(6.3)>	14 (16.3) <(107)> <<(58.2)>	8 (12.3) <(9)> <<(12.0)>	13 (12.4) <(13)> <<(7.9)>	2 (2.8) <(2)> <<(1.4)>	7 (6.3) <(7)> <<(1.9)>

주1) ()는 전체분규건수 대비 백분율, < >는 2006~2012년도 노사분규건수를 종전과 같은 방식(다수의 사업장이 산별노조 파업에 참가 시 사업장수대로 계상)으로 산출시 현황임

주2) 20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사업장단위 → 교섭단위) : ILO기준 등에 따라 금속노조, 보건의로 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 시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11.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공무원 노동조합

- 2014년말 기준, 공무원노동조합은 125개, 조합원은 184,260명으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9천여명 중 61.6%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조합원수는 14,654명이 증가하였고 조직률은 3.3%p 증가하였다.

【전체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2009년 12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조합수	95	96	99	110	121	125
조합원수	158,910	164,147	165,566	164,703	179,606	184,260
조직률	53.1	55.6	56.1	55.8	60.8	61.6

- 설립신고 기준 조직형태별 현황은 연합단체가 11개,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4개 노조·64,312명 이며 헌법기관 2개 노조·8,964명, 중앙행정기관은 2개 노조·24,476명, 지방자치단체는 81개 노조·57,401명, 교육청은 25개 노조·29,107명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연합단체	전 국	헌법기관	행정부	자치단체	교육청
노동조합수	125	11	4	2	2	81	25
조합원수	184,260	-	64,312	8,964	24,476	57,401	29,107

-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노조(연합단체, 단위노조 포함)는 3개(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연맹 및 소속 단위노조) 조합원 수는 2,520명으로 전체 조합원수의 1.4%이다.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없는 상태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노동조합은 222개 181,740명으로 전체 조합원수의 98.6%이다.

【종연합단체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원 구성비
계	125	184,260	100
한국노총	3	2,520	1.4
민주노총	-	-	-
미가입	222	181,740	98.6

■ 교원 노동조합

- 2014년말 기준, 교원노동조합은 10개, 조합원수는 60,120명으로 교원노동조합 가입 대상 414,417명의 14.5%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체 조합원수는 8,628명이 감소하였다. ※ 노동조합은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가 있고, 자유교원 조합은 6개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로 노동조합 수는 총 10개임)

【연도별 조합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합수	2	2	2	3	2	2	2	9	9	10	11	11	11	11	10	10
조합원수	87,668	106,060	113,056	118,435	120,060	105,000	106,209	104,280	98,649	92,877	82,324	75,425	74,465	69,656	68,748	60,120

- 2014년말 기준 각 교원노조별 현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53,470명,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 5,857명, 자유교원조합이 404명, 대한민국교원조합이 389명이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교조	한교조	자교조	대한교조	합 계
조합원수	53,470	5,857	404	389	60,120
구성비	88.9	9.7	0.7	0.7	100

- 전교조는 민주노총에 가입, 자교조는 한국노총에 가입, 나머지 교원노조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음

【총연합단체별 조합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원 구성비
계	10	60,120	100
민주노총	1	53,470	88.9
한국노총	7	404	0.7
미 가입	2	6,246	10.4

㉑ 공공기관 노동조합

- 2014년말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 공공기관(알리오 기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크린아이 기준. 공사, 공단, 출자·출연 법인)에는 493개 기관에 총 379,305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며, 이 중 224,51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직률은 59.2%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근로자수 및 조합원수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기관수	근로자수	유노조 기관수	조합원수	조직률
공공기관	493	379,305	313	224,510	59.2

-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현황을 다시 세분하여 보면 중앙공공기관 220개(유노조 271개), 지방 공기업 93개(유노조 131개)이며 전체 조합원수는 224,510명으로 59.2%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총계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계	공사	공단	출자·출연
공공기관수	493	316	30	86	200	177	62	80	35
유노조기관	313	220	30	77	113	93	41	46	6
근로자수(A)	379,305	320,660	112,119	87,273	121,268	58,645	34,391	22,315	1,939
조합원수(B)	224,510	188,478	76,316	60,887	51,275	36,032	25,823	10,018	191
조직률(B/A)	59.2	58.8	68.1	69.8	42.3	61.4	75.1	44.9	9.9



IX ·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 총연합단체별 공공기관 소속 조합원수 현황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수 90,550명,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수 90,454명, 상급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미가맹 조직의 조합원수 43,506명이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맹
공공기관 (구성비)	224,510 (100.0)	90,550 (40.3)	90,454 (40.2)	43,506 (19.4)